

## FSS/2206-06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 쟁점 분야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관련 기준 :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 결정일 : 2021년
- 회계결산일 : 2008.1.1.~2009.12.31.

###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인터넷 공급망 관리시스템을 개발 및 운영하는 업체이다. 회사의 최대주주겸 대표이사인 甲은 회사의 주가를 부양시킨 후 보유주식을 매도하기 위해 회사가 해외에 제품을 납품할 정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우량한 회사로 보일 필요가 있었다.

甲은 회사가 해외에 제품을 납품한다는 허위의 사실을 공시하고, 본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의 지분법투자회사 B사(국내)와 C사(해외)를 이용하여 회사의 실적을 부풀리기로 계획하였다.

회사와 B사는 C사(해외)에 제품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매출·매입 계약서 작성, 수출·입신고필증 위·변조 등을 방법으로 제품을 실제 납품한 것처럼 가장하여 A사, B사 및 C사의 매출 및 매출원가 등을 허위계상하였다. 또한 A사는 허위의 매출 등을 계상한 지분법피투자회사인 B사와 C사의 재무제표로 동 주식에 대한 지분법을 적용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하였다.

###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2개의 지분법피투자회사(B사, C사)의 재무제표에 매출과 매출원가 등을 허위계상한 후, 동 재무제표를 회사의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에 반영함으로써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다.

###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지분법)에 문단22에 의하면, 지분법은 투자회사의 대차 대조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매출과 매출원가 등을 허위계상한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를 회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 문단15 및 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며,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해야 한다.

② 감사인은 회사와 회사의 국내 지분법피투자회사인 B사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사의 매출 및 매출원가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히 하여 B사가 허위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계상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후 회사가 허위의 매출과 매출원가를 계상한 B사의 재무제표에 지분법을 적용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하였음에도, 감사인 본인이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를 신뢰하고 그대로 활용하였다.

#### **5. 시사점**

지분법투자주식에 대한 지분법 적용시 지분법피투자회사 재무제표의 왜곡표시는 지분법투자회사 재무제표의 왜곡표시를 초래하게 되므로,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와 지분법피투자회사의 감사인이 수행한 감사절차를 전문가적 의구심을 갖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